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감정평가의 실무적인 원칙과 기준을 연구·보급할 수 있는 기준제정기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,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전자적인 형태의 감정평가서 발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309호, 2021. 7. 20. 공포, 2022. 1. 21. 시행)됨에 따라, 기준제정기관의 기능 및 구성, 지정 절차와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의 수행 요건,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또한,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징수방식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,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등 감정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(안 제3조의2)

- 1)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추 것 등으로 정함
- 2) 법 제 40조에 따른 감정평가 관리·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고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을 지정 취소의 요건으로 정함
- 3) 기준제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·개정과 실무기준의 해석 등으로 하고, 실무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함
- 4) 기준제정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제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

명령할 수 있도록 함

나.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(안 제5조)

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,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용도 고려하도록 함

다. 감정평가사 적정성 검토(안 제7조의2)

- 1)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요건을 구체화 함
- 2)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 및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,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·허가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함
- 3)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명단과 업무 현황, 실적 등을 감정평가사협회에 보고하고, 협회는 해당 감정평가사들의 명단과 업무 현황, 실적 등을 관리하도록 함

라.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(안 제13조, 제14조)

- 1)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, 차수별 응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
- 2) 경력에 의한 1차 시험면제자의 업무종사기간 산정기준일을 제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로 명확히 규정함

마.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(안 제15조, 제16조)

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구체화하고, 교육연수 시간을 25시간 이상으로 정함

바.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(안 제24조의2)

- 1)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·회계사·법무사·세무사 등으로 하고,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 비율을 10% 이내로 정함
- 2) 감정평가법인에 두어야 하는 감정평가사 수의 기산 기준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명확히 함

사.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(안 제36조의2)

- 1)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·생년월일, 소속 법인등의 명칭,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,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등으로 정함
- 2) 징계정보를 게재하는 기간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3년, 업무정지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, 견책은 3개월 등으로 하고, 열람 신청기간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10년, 업무정지는 5년, 견책은 1년 등으로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 별첨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기준제정기관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

가.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.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 및 운영, 제·개정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

3.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

②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정관 또는 규약

3. 사업계획서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·징계위원회(이하 “감정평가관리·징계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기준제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관리·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제9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
4. 기준제정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
5. 그 밖에 감정평가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⑥ 기준제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연구
2.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
3.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해석 및 질의에 대한 회신

4. 그 밖에 감정평가 실무기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- ⑦ 기준제정기관은 실무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- ⑧ 기준제정기관은 제7항에 따른 기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준제정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요건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감정평가업자의 추천)”을 “(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”를 “협회”로, “감정평가업자 추천”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”으로, “감정평가업자를”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정평가업자를”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징계건수”를 “징계건수 및 내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 실적

제6조제1항 중 “감정평가업자는”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은”으로, “국토교통부장

관에게 제출”을 “해산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(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)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검토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(이하 “검토평가사”라 한다)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토평가사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그간의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배정을 받은 검토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서(이하 “검토결과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검토결과서의 작성 및 발급, 보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법 제6조를 준용한다.

④ 법 제7조제3항에서 “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감정평가 의뢰인

2.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(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하여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)

3.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·허가·등록·계약·사무 등을 수행하려

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⑤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검토평가사를 2인 이상 상시 고용할 것을 말한다.

⑥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평가사의 명단, 업무 현황 및 실적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회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보고한 검토평가사의 명단과 업무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(검토평가사를 포함한다)의 세부적인 기준과 자격, 제6항에 따른 업무현황 및 실적 등의 관리, 그 밖에 적정성 검토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·검사 또는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출입·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정평가업자와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각각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4만원으로 하며”를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하며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행일”을 “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”로 한다.

1. 감정평가법인등

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법 제17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”을 “법 제17

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(이하 “실무수습”이라 한다)의 기간은”으로, “1주일)을 말한다”를 “4주일)으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(이하 “교육연수”라 한다)의 시간은 2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실무수습(이하 “실무수습”이라 한다)”을 “실무수습”으로, “이론·실무”를 “이론·실무·직업윤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실무수습”을 “실무수습 및 교육연수”로 한다.

④ 실무수습 및 교육연수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실무수습 :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자
2. 교육연수 :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교육연수에 준용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등록신청서”를 “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개시 예정일의 변경
2. 주요 경력의 변경

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신고서”를 “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감정평가업자는”을 각각 “감정평가법인등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감정평가업자가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감정평가업자는”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1항) 중 “5명”을 “5명(상시 근무하는 자에 한정한다)”으로, “법 제29조제3항”을 “법 제29조제4항”으로 하고, 제4항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9조제3항”을 “법 제2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.

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토지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.

1. 변호사·회계사·법무사·세무사·기술사·건축사·변리사
2. 제1호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
3. 그 밖에 토지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9조제4항”을 각각 “법 제29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”을 “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9조제4항”을 “법 제29조제5항”으로,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 중 “법 제29조제4항 각 호”를 “법 제29조제5항 각 호”로, “법 제29조제4항제3호”를 “법 제29조제5항제3호”로 한다.

제29조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감정평가업자, 감정평가법인”을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, “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(이하 “감정평가업자등”이라 한다) 300”을 “30”으로, “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”을 “소속 감정평가사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인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감정평가업자는”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은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 제목 “(회원의 경력관리)”를 “(회원의 전문분야 관리)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력관리의 기준”을 “전문분야의 구분 및 관리”로 한다.

①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전문분야를 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회는 전문분야의 구분, 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징계의 공고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고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하여야 한다.

1. 징계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·생년월일 및 소속 감정평가법인등

의 주소·명칭

2.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(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)

3.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. 다만,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개시일 및 정지기간으로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징계정보를 게시하거나 협회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징계정보를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

1. 자격의 취소·등록의 취소 : 3년

2. 업무정지 : 해당 업무정지 기간. 다만,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.

3. 견책 : 3개월

③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 정보로 한다.

1. 자격의 취소·등록의 취소 : 10년

2. 업무정지 : 5년

3. 견책 : 1년

④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의사 및 징계정보가 필요

한 사유를 적은 확인서

3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⑤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,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

⑥ 협회는 제4항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징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⑦ 징계정보의 열람 신청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47조제2항제2호 중 “신청의 접수”를 “신청”으로, “영 제18조”를 “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, 제18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로 한다.

제48조제3호 중 “실무수습”을 “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법 제39조의2에 따른 징계의 공고에 관한 사무

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또는”을 “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 법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제정기관에게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1조 중 “2017년 1월 1일”을 “2023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감정평가서 등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급되어 보존하고 있는 감정평가서 원본 및 그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응시수수료 및 업무종사기간 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감정평가사시험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기준제정기관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</u> <u>가.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u> <u>나.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 <u>2.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 및 운영, 제·개정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</u> <u>3.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</u> <u>②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</u>

려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정관 또는 규약

3. 사업계획서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·징계위원회(이하 “감정평가관리·징계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기준제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관리·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제9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
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명령
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

4. 기준제정기관 스스로 지정
취소를 요청한 경우

5. 그 밖에 감정평가 기준의 제
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업무
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게
된 경우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
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
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
나 국토교통부 및 법 제33조제1
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
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의 홈페이
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⑥ 기준제정기관은 다음 각 호
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
평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
대한 검토 및 연구

2.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정
또는 개정

3.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해석
및 질의에 대한 회신

4. 그 밖에 감정평가 실무기준
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
이 정하는 업무

⑦ 기준제정기관은 실무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⑧ 기준제정기관은 제7항에 따른 기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준제정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요건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조(감정평가업자의 추천) ①

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건수

<신설>

4. (생략)

제6조(감정평가서 등의 보존) ①

감정평가업자는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존을 위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) ①

협회-----

-----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-----

----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

여야 한다.

② -----

-- 감정평가법인등을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징계건수

및 내용

4.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

가격공시 관련 업무 실적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6조(감정평가서 등의 보존) ①

감정평가법인등은 -----

----- 해산

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30일

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

출(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

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

경우를 포함한다)---

② (생략)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)

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(이하 “검토평가사”라 한다)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토평가사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그간의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배정을 받은 검토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서(이하 “검토결과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검토결과서의 작성 및 발급, 보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법 제6조를 준용한다.

④ 법 제7조제3항에서 “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감정평가 의뢰인

2.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

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(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하여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)

3.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·허가·등록·계약·사무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⑤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검토평가사를 2인 이상 상시 고용할 것을 말한다.

⑥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평가사의 명단, 업무현황 및 실적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회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보고한 검토평가사의 명단과 업무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(검토평가사를 포함한다)

제8조(타당성조사의 절차 등) ①

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.

1.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·검사 또는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,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정평가업자와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

의 세부적인 기준과 자격, 제6항에 따른 업무현황 및 실적 등의 관리, 그 밖에 적정성 검토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8조(타당성조사의 절차 등) ①

-----.

1. -----

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출입·검사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감정평가법인등과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감정평가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,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응시수수료) ① 법 제14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수수료(이하 “응시수수료”라 한다)는 4만원으로 하며,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4조(제1차 시험의 면제)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“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감정평가법인
2. 감정평가사사무소
3. ~ 9. (생략)

감정평가법인등 -----

⑥ -----

----- 감정평가법인등-----

제13조(응시수수료) ① -----

-----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하며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제1차 시험의 면제) ① --

1. 감정평가법인등

<삭 제>

2. ~ 8. (현행 제3호부터 제9호

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
종사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은
제2차 시험 시행일로 하며, 둘
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
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
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
다.

제15조(실무수습기간) 법 제17조
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기간”이란 1년(법 제15조제1
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
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
사람인 경우에는 1주일)을 말한
다.

<신 설>

제16조(실무수습사항) ① 법 제17
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(이하
“실무수습”이라 한다)을 받는
사람은 실무수습기간 중에 감정
평가에 관한 이론·실무 및 그
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
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
다.

②·③ (생략)

까지와 같음)

② -----

----- 시행일이 속한 연도
의 3월 1일-----

--.

제15조(실무수습기간) ① 법 제17
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(이하
“실무수습”이라 한다)의 기간은

----- 4주일)으로 한
다.

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
연수(이하 “교육연수”라 한다)
의 시간은 25시간 이상으로 한
다.

제16조(실무수습사항) ① -----
----- 실무수습-----

----- 이론·실무·직업윤
리 -----

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④ 실무수습의 내용·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등록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실무수습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④ 실무수습 및 교육연수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실무수습 :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자
2. 교육연수 :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교육연수에 준용한다.

⑥ 실무수습 및 교육연수-----

-----.

제17조(등록) ① -----

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

제20조(사무소 개설신고 등) ①

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사는 신고서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신고사항이 변경(소속 감정평가사 및 합동사무소 규약의 변경을 포함한다)되었을 때에는 변경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감정평가사사무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감정평가사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1조(합동사무소의 개설 절차 등)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감정평가사는 신고서에

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

개시 예정일의 변경

2. 주요 경력의 변경

<삭 제>

제21조(합동사무소의 개설 절차 등) ① -----

----- 등록신청

규약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2조(수수료 등의 공고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, 관보,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.

제23조(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)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.

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수수료 등의 공고) -----

--- 감정평가법인등-----

-----.

제23조(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)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-----

-----.

② 감정평가법인등은 -----

-----.

③ 감정평가법인등이 -----

-----.

④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.

제24조(감정평가법인의 구성)
<신 설>

<신 설>

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서

④ 감정평가법인등은 -----

--.

제24조(감정평가법인의 구성) ①
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.

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토지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.

1. 변호사·회계사·법무사·세무사·기술사·건축사·변리사

2. 제1호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

3. 그 밖에 토지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

③ 법 제29조제4항 -----
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”란 5
명을 말한다.

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
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
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
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제25조(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)

①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
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으
려는 자는 사원(社員)이 될 사
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
전원이 서명날인한 인가 신청서
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
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
제4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
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
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확인
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
따른 요건에의 적합 여부

2. (생략)

제27조(합병 등의 인가신청) 법
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

-----5
명(상시 근무하는 자에 한정하
다)-----.

④ 법 제29조제4항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)

① 법 제29조제5항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법 제29조
제5항 -----

-----.

1.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합병 등의 인가신청) 법
제29조제5항 -----

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28조(정관변경 등의 신고)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”이란 법 제29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.

제29조(인가취소 등의 기준)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제30조(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)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,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(이하 “감정평가업자등”이라 한다)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, 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

제6항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정관변경 등의 신고) 법 제29조제5항 각 호 ----- 법 제29조제5항제3호-----.

제29조(인가취소 등의 기준) ---- 감정평가법인등-----.

제30조(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) ① ----- 감정평가법인등----- 30----- 소속 감정평가사 300인 이상이 출석

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1조(공제사업 등)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제사업에 출자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3조(회원의 경력관리) ① 협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의 기준에 대하여 협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<신설>

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인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공제사업 등)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회원의 전문분야 관리) ①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전문분야를 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회는 전문분야의 구분, 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-----
--- 전문분야의 구분 및 관리-----
-----.

제36조의2(징계의 공고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

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고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하여야 한다.

1. 징계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·생년월일 및 소속 감정평가법인등의 주소·명칭

2.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(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)

3.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. 다만,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개시일 및 정지기간으로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징계정보를 게시하거나 협회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징계정보를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

1. 자격의 취소·등록의 취소 : 3년

2. 업무정지 : 해당 업무정지 기간. 다만,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.

3. 견책 : 3개월

③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정보로 한다.

1. 자격의 취소·등록의 취소 : 10년

2. 업무정지 : 5년

3. 견책 : 1년

④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징계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의사 및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확인서

제47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.

1. (생략)

2.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8조

3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⑤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,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

⑥ 협회는 제4항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징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⑦ 징계정보의 열람 신청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47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신청 ----- 영 제17조

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전통지

3. 법 제21조 및 이 영 제20조에

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
설신고, 변경신고, 휴업신고
또는 폐업신고의 접수

3의2. (생략)

4. (생략)

③ (생략)

제4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
의 처리) 국토교통부장관(법 제
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
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
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
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
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
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
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
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
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
실무수습, 등록·갱신등록 및
그 거부에 관한 사무

4. ~ 10. (생략)

<신설>

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
접수, 제18조-----

<삭제>

3. (현행 제3호의2와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
의 처리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-----

4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법 제39조의2에 따른 징계
의 공고에 관한 사무

제49조(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·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제51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9조(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) ① -----
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 법 또는 -----

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감정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제정기관에게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1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

 ----- 2023
년 1월 1일-----

 -----.